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02호 2013. 6. 5(수)

<b>조 례</b>	
○ 사천시 조례 제1043호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044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045호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046호 사천시 보건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047호 사천시 금연·절주 및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9
<b>규 칙</b>	
○ 사천시 규칙 제536호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b>훈 령</b>	
○ 사천시 훈령 제269호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	20
<b>고 시</b>	
○ 사천시 고시 제2013-8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	25
○ 사천시 고시 제2013-82호 공유수면 매립공사(소규모)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사항 고시 -----	26
○ 사천시 고시 제2013-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	2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4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제목과 본문 중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부칙 <10. 12. 31, 개정 12. 5. 30>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 을 “2013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3)

사천시 조례 제104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12월 31일” 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를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에 따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4)

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5)

사천시 조례 제104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6)

## 사천시 조례 제10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7)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회의 기능) ① 협회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회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회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협회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회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회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회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회회장 활동수당) 협회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8)

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재정) ① 협회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 정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9)

사천시 조례 제104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연·절주 및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금연·절주 및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금연·절주 및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0)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4.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사천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의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1)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2)

##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3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을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로, “의한”을 “따라”로, “개인택시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한다.

제2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로, “자는”은 “사람은”으로, “1년6개월이상”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있는 자로 한다.”는 “있어야 한다.”로 하며, “군복무기간중”은 “군복무기간 중”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3)

제3조 중 “시장은 시행규칙 제17조” 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9조” 로, “자에게” 는 “사람에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은 “~에 따라” 로 ,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3년이상” 은 “3년 이상” 으로, “6년이상” 은 “6년 이상” 으로, “자로서” 는 “사람으로서” 로, “자” 는 “사람” 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 은 “사람은” 으로, “자도” 는 “사람도” 로 하고, “제17조” 는 “제19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별표 1의 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며 이를” 을 “별표 1과 같고 시장이” 로, “1개월전” 을 “1개월 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허발급전까지” 를 “면허발급 전까지” 로, “자는” 은 “사람은” 으로, “여부에” 는 “여부와”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자는” 은 “사람은” 으로, “자로” 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에” 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호에 의거” 는 “각 호에 따라” 로,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이상일” 은 “100분의 50 이상일” 로, “100분의 50미만일” 은 “100분의 50 미만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조전임간부 재임기간중의” 는 “노조 전임간부의 재임기간 중의” 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는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동일회사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퇴직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속처리한다.” 는 “동일업종 관내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단,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로” 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면허처분전” 은 “면허처분 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사고중” 은 “교통사고 중”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4)

제9조제2항 중 “공고후에 이의신청자중”은 “공고 후에 이의신청자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5인”은 “15명”으로, “임명한다.”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는 “각 호의”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는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개인택시면허를”은 “면허를”로, “자는”은 “사람은”으로, “각 호에”는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는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각호의”는 “각 호의”로, “공고일이후”는 “공고일 이후”로 한다.

제14조 중 “자는”은 “사람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5)

[별표 1]

##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택시)

순위	내 용	배정비율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80 %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 6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당해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은 당해연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택시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6)

순위	내 용	배정비율
7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10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 청장(뺑소니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11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 시회사 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 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 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7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 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으로서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7)

##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내 용	배정비율
1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단, 버스( 시내·시외·농어촌 )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배정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버스운전자에게 60%,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40%를 배정한다. 이때 소수집착재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20%
2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서 버스를 8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당해년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3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8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사천시 관내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운전한 사람 (※ 당해년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시외·농어촌버스는 1년,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는 2년이 경과한 사람. 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는 당해년도 총 증차면허대수 중 사업용 및 기타 순위 면허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면허한다)	
5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8)

순위	내 용	배정비율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	
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8	훈 포상 및 선행자 상훈법에 의하여 훈 포장을 받은 사람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뺑소니 검거 유공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사람	
9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사람	
10	사업용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과 관용차량을 12년 이상 운전한 사람	
12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	

[적용기준]

1. 분야별 산정대수는 당해연도 총 면허대수에 배정비율을 곱하여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다만, 신규면허대수가 15대 미만일 경우 에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택시는 절상, 사업용 및 기타는 절사한다.
2. 택시 제4. 5순위 및 사업용 및 기타 제2, 3, 4순위내 제한범위에 의한 산정대수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다만, 산정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1대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19)

[별표 2]

## 개인택시면허신청구비서류

신청서류명	통수	비고
신청서	1통	소정양식(시에서 교부)
운전경력증명서	1통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통	경찰청 또는 사천경찰서 발행
건강진단서	1통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통	교통안전공단 발행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그 밖에 필요한 서류(훈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통	원본지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통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0)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69호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6월 5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한 녹취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녹취시스템을 운영하는 시 본청,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녹취시스템”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행정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② “녹취정보”란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 ③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 ④ “관리부서”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관장하는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사천시청 정보통신실 내에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시스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 시스템 부책임자는 관리부서의 담당주사, 시스템관리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1)

제6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제3자가 채록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제7조(시스템 사용) 시스템의 선택녹취기능이 가능한 행정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천시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녹취시 사전고지) 소속공무원은 녹취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통화상대자에게 녹취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은 녹취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녹취정보 관리) ① 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자료는 60일간 저장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 삭제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의 요구시 공무원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자료가 누출된 경우에는 공무원 당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시스템 관리자는 제10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녹취시스템내의 녹취정보를 제공과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절차) ① 정보주체의 녹취정보는 시스템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 사 전 시 공 보

제302호(22)

③ 녹취정보의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녹취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사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녹취 시 사전고지를 행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
- ②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5)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3-8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2-1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2년 6월 2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월등도 체험부교 설치로 비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체험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함.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173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내역 : 298㎡(149m×2m)
  - 데크 2식, 체험 부교(쪽배) 1식
6. 공사기간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11월 14일
7. 점용·사용 승인(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문화관광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3. 5. 15.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6)

사천시 고시 제2013-82호

## 공유수면 매립공사(소규모)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소규모)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사 천 시 장

### 1.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사항

면허번호	면허 년월일	매립목적	매립장소	면허 면적	준공 면적	피면허자		비고
						주소	성명	
2006-2호	2006.4.26.	물양장 연결도로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15번지선	986㎡	98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지사 (도로과장)	

### 2. 공사기간

○ 2006년 6월 16일 ~ 2007년 5월 31일

### 3.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일자

○ 2013년 5월 15일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7)

사천시 고시 제2013 - 8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 승인번호 : 제2013-5호
2. 점용·사용 변경 승인 년월일 : 2013년 6월 3일
3.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11번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 승인 면적 : 194m<sup>2</sup>
5. 점용·사용 목적
  - 토끼섬과 거북섬을 관찰, 교육할 수 있는 학습로(데크)설치 운영
6.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
  -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10년 06월 09일 ~ 2013년 06월 08일
    - 변경 : 2013년 06월 09일 ~ 2028년 06월 08일
7.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문화관광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 변경 승인조건 : 붙임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302호(28)

## 승 인 조 건

1. 동 시설물은 거북섬, 토끼섬을 관찰·교육할 수 있는 학습로(데크)시설의 기간연장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운영 시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변 해역의 쓰레기(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어업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위 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5.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6. 동 장소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7.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8.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